#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 의안 번호 | 2570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김기대, 김기덕,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양민규, 임종국,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의원(16명)

## 1. 제안이유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영유아 발달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 서 번 호 | 20210727000000020 |
|---|---|

# 미 첨 부 사 유 서 ( 1 호 )

| | |
|---|---|
| 요 청 인 : 정진술 의원 | 담 당 : 조도형 과장<br>이원상 팀장<br>이혜린 예산분석관 |
| 접 수 일 : 2021.07.27 | |
| 회 신 일 : 직접입력 | 내용문의 : 02-2180-7955 |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지원사업)제2항, 4항에서 영유아 발달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및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9조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8조(지원사업)제1항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제8조제3항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서울시 시민건강국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294,027천원(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479,810천원으로 연평균 495,96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치료지원비 및 상담·심리검사 지원 대상자 수는 2020년 기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급인원 309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참고) 2020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현황

| 구 분 | | 대상인원(명) | 지원현황 | |
|---|---|---|---|---|
| | | | 지원인원(명) | 지원률(%) |
| 계 | | **1,824** | **309** | **17**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146 | 16 | 11 |
| 건강보험가입자 | 차상위 | 40 | 7 | 18 |
| | 일반 | 1,638 | 286 | 17 |

-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

- 영유아 발달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치료비 지원사업 및 상담·심리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 센터에서 추진하고 센터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

로 전제

-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민건강국 제출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79,810천원 (연평균 495,962천원)

- 총 비용 = 실태조사비 + 치료지원비 + 상담심리검사 지원비 +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1년) | 2차년도 (2022년) | 3차년도 (2023년) | 4차년도 (2024년) | 5차년도 (2025년) | 합 계 |
|---|---|---|---|---|---|---|---|
| 세입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제7조 (실태조사비) | 30,000 | - | - | 30,000 | - | **60,000** |
| | 제8조제2항 (치료지원비) | 101,970 | 101,970 | 101,970 | 101,970 | 101,970 | **509,850** |
| | 제8조제4항 (상담심리검사비) | 27,192 | 27,192 | 27,192 | 27,192 | 27,192 | **135,960** |
| | 제9조 (사무의 위탁) | 354,800 | 354,800 | 354,800 | 354,800 | 354,800 | **1,774,000** |
| | 소계(b) | 513,962 | 483,962 | 483,962 | 513,962 | 483,962 | **2,479,810** |
| 총비용(b-a) | | 513,962 | 483,962 | 483,962 | 513,962 | 483,962 | **2,479,810** |

주1: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의 실태조사비 준용
주2: 치료지원비는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비 준용
주3: 상담·심리검사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의 외래진료상담비 준용
주4: 사무위탁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비 준용

○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실태조사 ≒ 60,000천원

= 30,000천원 × 2회

※참고) 실태조사 단가(2021년 시민건강국 예산서 기준)
- 정신응급쉼터 실태조사 35,000천원
- 서울시 길거리 흡연 및 흡연부스 실태조사 22,000천원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비 ≒ 509,850천원

= 330천원 × 309명 × 5년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회당27,500원, 월1회로

가정하여 연330천원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는 회당27,500원, 월8회로 지급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상담·심리검사지원비 ≒ 135,960천원

= 88천원 × 309명 × 5년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상담·심리검사는 연1회로 가정

※참고) 외래진료상담비 단가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외래진료상담비 8,000원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심리검사비 80,000원

○ 사무의 위탁(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비용) ≒ 1,774,000천원

= 354,800천원 × 5년

※(가칭)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예산 편성내역(안)

(단위 : 천원)

| 내역 | 세부내역 | 예산 |
|---|---|---|
| 합 계 | | 354,800 |
| 사무관리비 | - 운영경비 등 | 15,000 |
| 민간위탁금 | - 인건비<br>35,600천원*3명<br>- 관리운영비 | <br>106,800<br>30,000 |
| 민간위탁사업비 | - 업무용 PC 등 구입<br>1,000천원*3대 | <br>3,000 |
| 기타자본이전 | - 임차보증금 | 200,000 |

자료 :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참고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혜린

☏ 02-2180-7955

e-mail : lovelynn91@seoul.go.kr